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3-5-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 등 시행세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2)

1. 역량중심 교육과정
2. 융복합 교육과정
3.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4. 수월성 증진
5. 유연성 증진

제4조(교육과정 용어) 교육과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라 함은 교육과정의 편성을 말한다.
2. “교육과정 평성기준” 이라 함은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라 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학사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부(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부(과) 단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15.1.1.)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변경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제6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의 경우 필수, 기본, 공학기초, 일반교양선택, 단과대학 지정교양선택으로, 전공과목의 경우 기본, 심화로 구성하고, 그 외에는 자율선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②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목 : 총 졸업 소요학점의 20~30%로 한다.
2. 전공과목 : 총 졸업 소요학점의 50~70%로 한다.
3. 복수전공 :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개정 2015.1.1.)
4. 연계전공 :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개정 2015.1.1.)
5. 부전공 :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전공 21학점 이상(개정 2015.1.1.)

③ 단과대학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22.)

제7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과운영은 이론교과, 이론 및 실습병행교과, 실험·실습·실기교과로 구분한다.

② 이론교과는 학기당 최소 1학점 당 15시간 수업, 실험실습실기교과는 30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시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과)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8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정기개편, 수시개편으로 나눈다.

② 교육과정의 개편의 주기는 교양은 2년, 전공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 신설, 통합, 폐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교과목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이수구분 변경, 이수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으로 구분한다.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편계획 수립
2.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교양교과목 : 교양교육과정개선위원회
  - 전공교과목 :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3.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
  - 미래 유망산업 조사 : 취업현황 분석
  - 관련 문헌 및 타 대학 교육과정 조사
4. 교육과정 개편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공고)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성과 실현성,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 검토
6. 교육과정 확정 공고

제9조(교육과정 관리 및 유지) ① 각 과정의 교육과정표는 확정 즉시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하

여야 한다.(개편일자, 시행시기, 경과조치, 회의록 등을 기록)

② 교과목의 코드는 전산처리를 위하여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체계적 부여하고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